

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

제정 통계청예규 제261호 2023.6.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통계법 시행령」 제49조에 따라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통계자료”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·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(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공표자료”란 「통계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,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(전자매체 포함)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.
3. “공표외 자료”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
 - 가. 개인, 가구, 사업체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·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,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(Microdata)
 - 나. 개인,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
 - 다.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
 - 라.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,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
 - 마. 거처,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
4. “행정통계자료”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, 정제,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) ① 통계청은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

둔다.

②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(심의회 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.

1. 공표의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
2.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
3. 공표자료 또는 공표외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
4.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
5.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심의회 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 의장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통계정책과장, 통계데이터기획과장, 행정자료관리과장, 통계등록부과장, 마이크로데이터과장, 경제통계기획과장, 사회통계기획과장, 조사기획과장, 표본과장, 통계방법연구실장
2.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회의 소집,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통계데이터기획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

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촉위원의 해촉)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심의회 소집) ① 의장은 월 1회 심의 안건의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소집한다. 다만,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긴급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심의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④ 심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안건 관계자, 전문가 또는 생산부서의 장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통

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·단체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
3. 위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 및 사업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하고있는 경우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의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1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,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.

제11조(의결)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안건 관계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심의회 결정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기한이 지난 사항과 재심의를 거친 심의회 결정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. 다만, 재적위원 2/3이상인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비밀유지 및 중립성) ① 위원,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회의록 작성)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,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. 단,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14조(자료제공 내역 관리)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(이하 ‘자료제공내역’이라 한다.)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·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자료제공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료제공 요청일, 요청인 또는 요청기관, 요청내용 등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
2. 심의결과, 제공자료, 제공방법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

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내역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,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 <제261호, 2023.6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훈령을 폐지한다.

제3조(재검토 기한) 이 규정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